

지뢰사고의 아픔 국방부가 함께 합니다. 지금 신청하십시오!



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안내

지뢰사고 피해자 지원이란?

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,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「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(법률 제6359호, 2019. 4. 23. 제정 2019. 6. 1. 일부개정안 시행)

신청 대상자 1953. 7. 27 ~ 2012. 4.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

신청 제외 대상 1.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
2.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
3.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

신청 기간 및 방법

신청 기간 2019. 6. 1 ~ 2021. 5. 31.

신청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(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, 국방컨벤션 421호 / 02) 748-5962)

신청 방법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

신청 서식 국방부 누리집 → 정보공개 → 업무분야별 자료 → 서식 →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활용

지급절차

위로금 등 신청서 접수 → 사실 조사 → 위원회 심의·결정·지급

산정기준

- 위로금 - 사망자: 위로금 $\times (1 + [(지급일 - 사망일) / 365 \times 0.05])$
- 상이자: (휴업위로금 + 장해위로금) $\times (1 + [(지급일 - 상이일) / 365 \times 0.05])$
- 상이자 중 사망자: 휴업위로금 + 장해위로금 + 사망위로금
- 위로금: 월 평균 임금 $\times$ 장래 취업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$\times$ 본인의 생활비 공제율 $\times (1 - \text{피해자과실률})$
위로금이 현저히 적을 경우 법령에 따라 조정지급(2천만원 한도) 가능
- 의료지원금: 기지급 치료비 + 보호비 + 보장구 구입비 + 향후치료비

* 궁금하신 것은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(02-748-5963)이나 주민자치센터 민원행구를 이용하십시오 / * 국방부 홈페이지 www.mnd.go.kr



대한민국 국방부
Ministry of National Defense